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9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을 고려한 중장기 감축목표 수립 >
■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84호)

2026. 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을 고려한 중장기 감축목표 수립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8일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0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발표하였음. 이는 기존의 2030년까지 40퍼센트 감축 목표보다 20퍼센트 높은 수준임.

그런데 산업계 등에서는 급격한 목표의 상향이 전력 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법은 감축 목표의 비율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문별·연도별로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감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신뢰가 낮은 상황임.

이에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3호의2 신설).

III. 검토의견

1.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을 고려한 중장기 감축목표 수립

개정안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3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④ (생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3의2.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u>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8조제5항¹⁾은 중장기감축목표등(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

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감축목표가 선언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실행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며, 전력·산업·수송 등 부문별 감축 목표에 대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
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 제10조²⁾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연도별·부문별 세부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도 개정안의 취지가 일정 부문 반영³⁾되어 있고, 연도별·부문별 이행계획을 고려하여 중장기 감축목표를 수립할 경우 관계부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에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또한, 현행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할 때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의 부문별감축목표 및 제3항의 연도별감축목표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가 현행법 제8조에도 既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36